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0. 05.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역 전통산업진흥에 관한 교육, 연구개발, 기술지원, 컨소시엄, 창업 및 산업화지원 구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전통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주지역전통산업 개발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
2. 원주지역전통산업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현장애로과제 중심의 응용연구
3. 원주지역전통산업 산업진흥 관련 상지대학교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4. 원주지역전통산업 산업분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산학관 협동
5. 원주지역전통산업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보급, 전시를 위한 사업
6. 원주지역전통산업 사업관련 수익사업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소재) 센터 및 그 부속기구는 상지대학교 교내 내에 둔다.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4조(기구) 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실을 둘 수 있다.

1. 창업보육실
2. 지원실
3. 컨설팅실
4. 교육실
5. 세미나실
6. 전시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은 1인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

명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교육·연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⑤ 센터내 공용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원) 이 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 객원위원, 책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위원, 객원위원, 책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자문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내 전임교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교외인사(이하 '외부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9인 내외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센터의 기구와 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
 - 3. 예산 및 결산
 - 4.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5. 임대실 창업 및 연구소 입주 자격심사
 - 6. 연구장비 및 기타장비 구입 및 기증이나 임차에 따른 승인심사
 - 7. 정책 및 연구과제 수주에 관한 자문
 - 8. 국제교류와 관계된 업무
 - 9.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외부운영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각 종 세부사업 및 역동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계

제10조(수입)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1. 센터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용역 수익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및 지원금
3. 대학의 지원금
4. 센터 임대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
5. 기부금 등 기타 수익

제11조(예산과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센터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